

#### [서식 예]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

## 소 장

- 원 고 O O O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 - OOO)
- 피 고 1. 서울특별시 △△구청장 2. 서울특별시 △△구 대표자 구청장 △△△

피고들의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 (우편번호 ㅇㅇㅇ - ㅇㅇㅇ)

#### 개별공시지가결정무효확인 및 손해배상(기)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 1.의 2000. O. O. 서울시 OO구 OO동 OOO 대 OOOm<sup>2</sup>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- 2. 피고 2.는 원고에게 금 1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. 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- 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- 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# 청 구 워 인

1. 원고는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대 ㅇㅇㅇ㎡(이하'이 사건 토지'라고 합니다.)



를 소유하고 있습니다.

- 2. 피고 1.은 20○○. ○. ○.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침이 없이 1,000원/m²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하였습니다.
- 3. 그런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은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,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 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피고 1.의 위 결정은 절차상 중대,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어 당연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.
- 5.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, 양도소득세, 상속세 등 조세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본 건 소송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.
- 6. 또한 원고는 피고 행정청의 위법한 위 결정으로 인해 직접 소송준비를 하는 등심적 괴로움을 겪었는바, 위와 같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2.는원고에게 위자료 1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행정청의 위 결정일인 20○○.○. 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.
- 7.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#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2호증

개별공시지가표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납부서

1통



# 20 ○ ○ 년 ○ 월 ○ 일 원 고 ○ ○ ○ (인)

## ○ ○ 행정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8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)		
불복방법 및 기 간			

#### 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, 38조)

- 1. 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무효 등확인소송 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#### 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, 38조)

- 1.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은 제한이 없다. 다만 처분의 무효선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음. 따라서 무효선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할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제1항 단서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